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8
----------	-----

발의년월일 : 2015. 11. 20.

발 의 자 : 유인애 의원

찬 성 자 : 박문수 의원, 김영준 의원
김명숙 의원, 이용균 의원, 장동우 의원
이정식 의원, 강선경 의원, 한동진 의원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적용대상을 12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안 제2조)
-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다. 구청장이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아동의 보행 편의, 아동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을 반영토록 하는 사항 규정(안 제6조)
- 라.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안 제7조)
- 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유엔아동권리협약」
- 나. 예산조치 : 필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할 것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1. 사회복지·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2.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3. 학부모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 대표자

4.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12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7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